

「시도(진동로) 확·포장공사」

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, 보상계획 열람 공고

제주시가 시행하는 “시도(진동로) 확·포장공사”와 관련하여 「도로법」 제26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 등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

주민 및 토지소유자, 이해관계인 등은 “도로구역의 결정” 및 “사업인정”, “보상계획”에 대하여 의견이(의의가)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3월 25일

제 주 시 장



1. 사업의 개요

도로의 명칭	사업의 종류 및 명칭(사업명)	사업예정지(위치)	사업내용	사업시행자의 명칭(성명) 및 주소
시도 15소5014 및 15소5015	시도(진동로) 확·포장공사	제주시 화북일동 일원 (화북일동 1512-2 ~ 1553-2)	○연장 : 57m ○폭원 : 6m	제주시장/ 제주시 광양9길 10(이도이동)

○사업기간 :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 ~ 2021. 12.

2. 도로구역 결정 사유

○ 화북상업지역과 연계한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등

3. 도로구역 결정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,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

○ 열람장소 비치(계재생략) ※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시기 : 2019년 3월

4. 보상협약에 관한 사항

- 보상시기 :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~ 사업완료시까지(예산범위내 보상 실시)
- 보상방법 : 3인(시·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 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2인)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보상
- ※ 시·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할 수 있음(단,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할 것)
- 보상절차 :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시 지급

5. 열람 및 의견(이의신청) 제출

- 기 간 : 2019. 3. 25.(월) ~ 2019. 4. 8.(월)
- 장 소 : 제주시 도시재생과
- 의견제출(이의신청) 방법 :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·제출(열람장소 의견서 비치)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도시재생과(☎064-728-354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서(이의신청서)

사 업 명 : 시도(진동로) 확·포장공사

1. 제 목

2. 의견제출자
(당사자 등)

성명(명칭)

생년월일

주 소

3.의 견

4.기 타

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15조 및 제21조 등의
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9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연 락 처 :

제주시장 귀하

비 고

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